

# 문서제출명령신청

감제 68호증

사 건 95가합 96142 부교수지위확인  
원 고 감 명 호  
피 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.

## 1. 문서의 표시

피고가 1993. 3. 1. 원고를 조교수로 재임용할 당시 교원인사 규정 제19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한 연구실적 심사자료 일체.

## 2. 입증 취지

위 자료와 이사건 연구 실적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이사건 연구실적 평가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함.

1996. 1.

위 원고소송대리인

변호사 이 석 태

서울지방법원 민사제27부 귀중.

- 1 -

공증인가 특수합동법률사무소  
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

전화 : 567-2316

팩스 : 568-3439